

## 排出 賦課金 制度

鄭 國 鉉

(環境庁 振興協力課長)

### 5. 排出賦課金 賦課 및 徵收節次

賦課金の 賦課節次를 크게 區分하면 檢體採取→分析 및 檢査→改善命令→改善計劃書 提出→賦課金納付通知書 發給→納付의 順이다.

#### ○ 檢體採取

市道 또는 市郡區에서는 관찰매출업소에 대하여 排出許容基準超過 與否를 調査하기 위하여 檢體를 採取한다. 賦課金 制度를 實施하기 以前에는 濃度檢査만 해 왔으나 現在는 排出流量도 반드시 調査하여야만 賦課金을 賦課할 수 있다.

#### ○ 分析 및 檢査

採取된 檢體는 市·道保健研究所, 環境測定管理事務所 및 試驗·分析研究機關으로 移送된다. 同 機關에서는 汚染物質을 分析, 調査한 후 그 測定結果를 市·道(市·郡·區)에 通報한다.

#### ○ 改善命令(移轉命令)

測定結果를 通報받은 市·道에서는 汚染物質의 濃도가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는 業體에 對해서는 改善命令, 또는 移轉命令을 發하게 된다. 改善命令書에는 改善期間, 改善對象施設 등이 기재되며 改善期間은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改善, 代替等에 必要한 期間을 감안하여 1年(移轉命令의 경우 2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定하여야 한다.

#### ○ 改善計劃書 및 移轉計劃書の 提出

改善(移轉)命令을 받은 事業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15日 以內에 다음 사항을 明示한 改善(移轉)計劃書を 提出하여야 한다.

즉 一.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改善 內譯 및 設計圖

一. 汚染物質 등의 處理方式 및 효율

一. 工事期間 및 工事費

#### 一. 改善期間中 排出되는 汚染物質

등의 最小化 方案

\* 改善期間中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여 汚染物質等を 排出하면서 操業할 日數 事業者가 改善計劃書 또는 移轉計劃書を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提出하였더라도 위의 該當事項을 明示하지 아니한 때에는 改善 또는 移轉期間中에 改善(移轉)命令에 明示된 汚染狀態에서 汚染物質을 排出하면서 排出施設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推定한다.

#### ○ 賦課金 納付通知

市·道知事는 事業者로 부터 提出된 改善計劃書 또는 移轉計劃書에 明示된 排出期間에 의하여 산정한 賦課金額, 納付日字, 納付場所 등을 기재한 納付通知書を 발부토록 되어있다. 納付通知書の 발부 시기는 다음과 같다.

\* 改善計劃書 또는 移轉計劃書を 接受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改善計劃書나 移轉計劃書を 提出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環境保全法 施行令 第17條의 6 第1項 各號의 해당사항을 明示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획서를 提出하여야 할 날로부터 5日 이내이다.

#### ○ 賦課金 納付

賦課金の 納付期限은 納付通知書 發給日로부터 30日로 되어 있다. 期限內에 納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5%의 加算金を 물게된다. 納付場所는 市·道가 아니라 農業協同組合中央會(市·道·郡 支部包含) 및 中小企業銀行이다.

\* 賦課金を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納付期限 經過後 7日內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納付期限을 發付日로부터 10日內로 한다.

< 다음호에 계속 >